

의안번호	2210335
의 퇴 인	황희의원
회 답 일	2025.6.11.
추계번호	25D2747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3 (문화시설 등의 이용 지원)	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궁, 공원,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11조의3(문화시설 등의 이용 지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·운영하는 고궁, 공원,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(이하 “고궁시설 등”)을 군인¹⁾이 이용하는 경우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궁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이 고궁시설 등을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하도록 되어 있어, 현 시점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궁시설 등을 특정하기 어려움

1)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“군인”이란 현역으로서 「군인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·준사관·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.

- 또한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·운영하는 국립공원, 지방유적지 등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면제·할인하고 있는 등 시설의 관리·운영 주체에 따라 고궁시설 등을 상이하게 운영 중에 있음
- 현재 현역 군인은 「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4대궁, 종묘, 세종대왕유적 및 조선왕릉을 무료로 관람 가능한 반면, 지방 유적지 등은 군인에게 입장료 일부를 할인 또는 면제해주고 있음

[표 2] 고궁 및 공원 등 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군인 감면 사례

시설종류		입장료·관람료 등 부과 주체	관련 규정	군인 면제·할인 적용
국립고궁박물관		관장	「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」 (국립고궁박물관예규)	-
궁·능 ¹⁾		궁능유적본부장	「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 (궁능유적본부훈령)	현역 군인 면제
국립공원		환경부장관	「자연공원법 시행규칙」 (환경부령)	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면제
지방 문화재 및 유적지등	문화재	시장	「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」(충청남도공주시조례)	군인 할인
	유적지	시장	「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 리·운영 조례」(경기도여주시 조례)	군인 면제
	선사유적 박물관	군수	「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 관 관리·운영 조례」 (강원도양양군조례)	군인 할인
	도립공원	시장·군수	「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」(제주특별자치도조례)	군인 할인
		시장·군수	「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」 (경상북도조례)	군인 할인

주: 1. 4대궁, 종묘, 세종대왕유적 및 조선왕릉

2. 「자연공원법 시행규칙」은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에 대해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국립공원 입장료는 0원임

자료: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및 조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이 고궁시설 등을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하도록 할 경우, 현행 군인의 고궁시설 등의 이용 시 각 고궁시설 별 할인된 단가와 개정안에 따른 할인된 단가 간의 차이, 고궁시설 별 군인의 이용 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함
-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군인에게 고궁시설

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되거나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IV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